

발표 02

농업 · 농촌과 환경의 접목: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 도입

유럽 농촌환경관리 정책의 형성과정과 영향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

유럽 농촌환경관리 정책의 형성과정과 영향

- EU와 영국 농촌관리정책의 사례 -

김태연 (단국대학교)

I. 왜 농촌환경을 보존해야 하는가

1. 건강한 농촌사회는 국민행복의 기반이다.

□ 농촌의 과거는 산업화의 토대였으며 농촌의 현재는 산업화의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 국가의 미래는 농촌의 미래 모습에 달려있다.

○ 근대 경제발전이론은 농촌지역에 과도하게 존재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근대적인 산업생산을 위해서 이동해야만 국가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많은 인적자원과 자연자원이 산업생산에 투입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개도국들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농업의 기계화와 산업화 그리고 농업노동력의 도시 이주로 인해서 도시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하였지만, 농촌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단일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점차로 인구가 감소하는 쇠퇴하는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도시의 발전과 확대가 산업화의 표상이라면 농촌의 쇠퇴도 산업화의 또 다른 결과물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결과로서 현재 우리가 당면한 도시 팽창에 따른 문제는 더 이상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농촌과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 국민행복은 건강한 농촌이 담보되어야 지속될 수 있다.

○ 국민의 행복은 국민의 건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과 농촌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추진 시기에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었다. 그러나 국민행복 시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의 기능과 역할도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 생산량 증대 중심의 농업생산에서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화학적 투입재 중심의 생산방식에서 환경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생산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식품섭취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성을 제고하고, 농지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서 토지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국토의 건강성을 제고하

며, 농촌지역에 농업 이외의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농촌경제의 다양성을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건강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2. 농촌환경, 이대로 훼손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농촌환경보존은 불가능하다.

-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의 상생은 최근까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환경을 전혀 훼손하지 않은 경제개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개발은 환경보전과 양립할 수 없었고, 둘째, 도시의 확대는 농촌의 보존과 양립할 수 없었고, 셋째, 농업생산의 집약화와 산업화는 농촌 생물다양성 보존과 양립할 수 없었다.
- 도시민뿐만 아니라 농촌주민 대부분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부유한 삶 = 복지의 향상’이라는 개념의 풍요한 생활이었고 경제적 부의 향상이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편의성을 농촌에서도 누리길 바랐던 것이다. 즉, 농촌개발, 농업생산성 향상의 목표는 농촌에서도 도시와 같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도시화가 농촌개발의 목표였다.
- 현실적으로 농촌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의 발전이 경제적 성장과 도시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농촌지역의 환경을 복원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실행해서는 복원된 환경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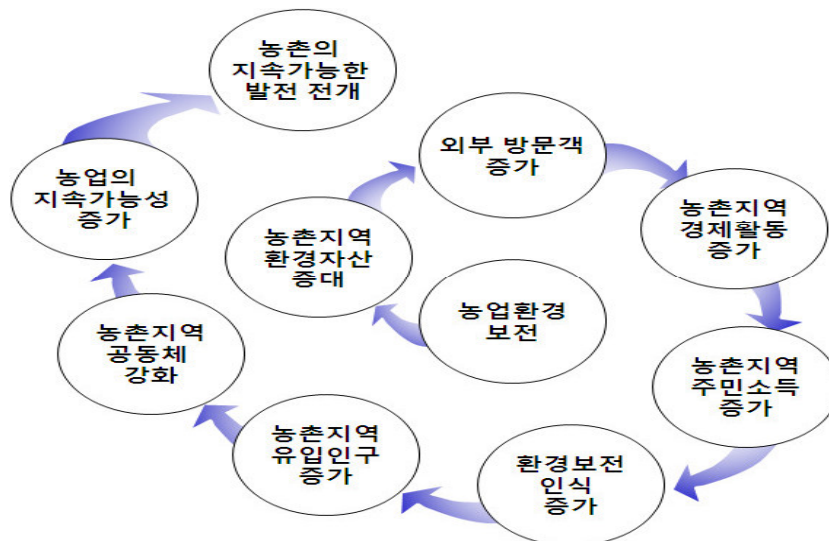
□ 환경이 파괴된 농촌은 경쟁력이 없다.

- 최근까지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태를 농촌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탈피해서 도시화하는 것이 경제발전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고전적인 이론에는 도시화를 추구하는 발전은 있지만, 농촌을 유지하는 발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환경이 파괴된 상태에서 농촌발전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농촌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부분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환경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자원이 파괴된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어떠한 경제적 이점도 없을 가능성이 높고, 환경이 파괴된 농촌에서는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
- 그래서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요소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인 환경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농촌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다.

- 농업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그 동안 농업의 산업화 과정에서 중단되었던 자연과 인간 간의 순환과 공생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농업환경자원 보존에서 시작된 농촌지역 환경자원 복원 및 보존의 효과는 다원적인 차원의 성과이고 이들은 서로 긴밀한 연계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농업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림 1>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현재 농업생산을 위해서 단절된 공간으로 이용되고, 집약적 농업에 의해서 파괴되어 가는 농촌지역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경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농업과 농촌지역의 다원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지역 토지의 대부분이 농업으로 사용되고 있고, 농촌주민의 다수가 농업활동으로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중심으로 환경자원을 보존하는 시책으로 시작되어야 그 보존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 농촌환경정책 도입의 기본 논리



II. 유럽은 농촌환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가

1. 유럽은 농촌환경보존을 위해 농업환경(Agri-Environment)정책을 도입했다.

□ 농업환경정책은 농촌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이다.

- ‘농업환경(Agri-Environment)’이라는 용어는 ‘농업활동으로 인해서 조성된 농촌지역의 경관, 생물다양성, 역사적 유적, 문화적 유산 등을 통칭하여 이르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

러한 농업환경에 관한 정책을 농업환경정책(Agri-Environmental Policy)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농업정책의 한 분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EU이다. 이 정책은 ‘정부나 농업관련 기관이 농업예산을 활용하여 환경재 생산을 촉진하거나 환경적 악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 (Hanley & Oglethorpe, 1999)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즉, 농림축산업과 관련된 제반 활동이 농촌지역의 경관과 국토의 모습을 형성한다는 인식에 따라 농림축산물 생산활동이 농촌지역의 환경, 문화, 역사, 경관 의 유지, 보존, 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명칭으로는 ‘농업’ 환경이지만 실제 정책의 내용은 ‘농촌’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포괄하고 있어서 농촌환경정책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영국에서는 그 명칭 자체가 ‘농촌관리(Countryside Stewardship)’ 정책이어서 점차로 농업환경을 농촌이라는 포괄적 개념 하에서 다루려는 국제적인 추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농촌환경정책에 대한 EU와 영국의 최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농촌환경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2. EU는 농업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1985년 환경민감지역(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정책으로 시작되었다.

- EU의 농업환경정책은 1985년도 규정 797/85(CEC, 1985)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 법안의 19조에서 개별 회원국이 환경민감지역(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chemes)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시초다. 이 시책은 19조 1항에서 이 정책의 도입목적을 ‘자연적인 서식지를 보존하고 농가의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시책을 통해서 환경보존과 농가소득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 이후 1987년에 규정 1760/87(CEC, 1987)에서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환경 및 자연자원의 보호, 경관과 전원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원’ 조항으로 농업환경정책이 실질적으로 회원국에 적용되기 시작되었다.

□ 1992년 UR협정 대비를 위한 개혁에서 동반조치 중 하나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 농업환경정책의 1차 확대는 1992년 맥서리 개혁(CEC, 1991)에서 세 가지 동반조치 중의 하나로 도입된 규정 2078/92호(CEC, 1992)에서 ‘환경보호와 전원유지에 필요한 영농방법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면서 이루어진다. 이 규정에서도 농업환경조치를 도입하는 세 가지 목적으로 ①시장조직규칙에 도입되었던 변화에 대응하는 보완적 조치의 역할, ② 농업과 환경에 관한 EU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 ③ 농민에 대한 적정한 농업소득의 확보에 기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관련해서 최소 5년간의 ‘지구(Zone)단위’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기준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상호준수의무규정(Cross-Compliance)을 도입하였다.

□ 2000년 농정개혁에서는 모든 EU 회원국의 의무 시행 정책으로 확대되었다.

- 농업환경정책은 농촌개발법안인 규정 1257/1999호(CEC, 1999a)에서 ‘농업환경시책(Agri-Environmental measure)’으로 명명되었고, 그 지향점으로 i) 저투입 영농 시스템의 유지 및 장려, ii) 자연보존가치가 높은 지역(high nature value)과 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보존과 장려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 농업환경정책 시행 계획 작성 시 고려 사항

- a) 환경적인 기대 성과에 대한 타당성
- b) 소멸위기에 처한 동물종 보전에 대한 과학적 근거
- c) 유전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식물자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 d) 농장관리 계약에서의 농민의 의무와 보상금 지급 조건에 대한 명시
- e) 농업환경조치의 시행 범위(지리적, 산업부문 및 기타 범위와 수준)
- f) 환경보전 활동에 따른 소득감소 및 비용추가분, 농학기술의 수준, 인센티브 수준에 대한 농학적인 계산 근거 명시
- g) 농업환경정책이 고려해야 할 기타 내용들

자료 : CEC, 1999b, 49p.

- 이 시책의 세부적인 시행기준은 규정 1750/1999(CEC, 1999b)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 회원국별로 기본영농수칙(Good Farming Practice), 보조금 조정제(Modulation), 전체농장적용원칙(Whole Farm Approach)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EU가 규정하고 있는 농업환경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1999년 개혁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농업환경정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때 〈표 1〉에는 보는 바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모범 영농 및 환경 조건

분야	필수사항	선택사항
토양부식 방지	- 최소량의 토양 마련 - 토질의 특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토지관리	- 다랭이 경지의 유지
토양유기물 유지	- 작물의 그루터기 관리	- 작물의 윤작체계 기준
토양 구조의 유지		- 적절한 농기계의 사용
최소한의 관리를 통한 서식지의 파괴방지	- 영구초지의 보호 - 경관요소들의 보호, 관리 (담쟁이덩굴, 연목, 고랑, 경지간 경계물) - 농지에 불원 생식계의 출현 방지	- 최소 가축사육 마리 수 유지 - 서식지의 형성 및 유지 - 올리브 나무 파손 방지 - 좋은 식생의 올리브 숲과 포도밭 유지
수자원 관리 및 보호	- 수로의 완충지 형성 - 법적 절차를 따르는 관개수 사용	

자료 : CEC, 2003a.

□ 2003년 CAP 중간평가개혁에서 농업생산의 환경조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 CAP 정책은 2003년에 다시 한 번 소위 중간평가개혁(Mid-term review)을 시행하는데, 직불제 관련 법안인 규정 1782/2003(CEC, 2003a)을 도입하여 전반적으로 농업의 환경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영농방법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기존 농촌개발법안

의 일부를 수정한 규정 1783/2003(CEC, 2003b)을 도입하여 농업환경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기존의 모범영농조건(Good Farming Practice)을 모범영농환경조건(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으로 강화하였다(표2 참조). 즉, 기본적으로 모범영농환경조건을 준수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2003년 중간평가개혁을 통해서 농업환경정책의 범위도 좀 더 확대되었는데, 기존에 환경보호 조치로 도입되었던 분야의 활동을 수행하는 농민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야생 새 보존에 관한 규정 준수 (Directive 79/409/EEC), 지하수 보호에 관한 규정 준수 (Directive 80/68/EEC), 토양과 관련된 환경의 보존(Directive 86/278/EEC), 영농에 따른 질산오염으로부터 물 보호(Directive 91/676/EEC), 자연 서식지와 야생 동식물 보존 (Directive 92/43/EEC) 등이며, 이에 대해 ha당 최고 200€~500€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2005년에 개편된 농업환경정책은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 EU는 농업환경정책을 크게 생산적인 토지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과 비생산적인 토지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다.
- 생산적 토지관리 프로그램(Measures related to productive land management)은 다음과 같다.
 - a) 투입재 감소(Input reduction): 비료 등 감소, 유기농도 포함 가능
 - b) 유기농업(Organic farming): 투입재감소, 윤작, 방목 등의 종합
 - c) 가축의 방목(Extensification of livestock)
 - d) 초지화/윤작(Conversion of arable to grassland and rotation measures)
 - e) 피복작물 및 완충작물(Undersowing and cover crops, strips and preventing erosion and fire)
 - f) 특별 생물다양성 및 자연보전지역 관리(Actions in areas of special biodiversity/nature interests)
 - g) 유전적 다양성(Genetic diversity): 지역적으로 희귀식물 등의 보전
 - h) 지속가능한 조방적 시스템 유지(Maintenance of existing sustainable and extensive systems)
 - i) 농업경관(Farmed landscape): 특징적인 경관을 주는 농업시스템의 유지 지원
 - j) 물사용감소(Water use reduction measures): 수자원의 보전 목적
- 비생산적 토지관리 프로그램(Measures related to non-productive land management)은 다음과 같다.
 - a) 휴경(Set aside): 환경적인 목적을 이유로 휴경
 - b) 버려진 농지/산림의 관리(Upkeep of abandoned farm land and woodland) : 농업에 의존하는 동식물(조류 등)의 서식지 제공 지속
 - c) 전원과 경관의 특징의 유지(Maintenance of the countryside and landscape features): 담쟁이넝쿨(Hedge), 돌담(Stonewall) 등의 유지·보수
 - d) 일반인 접근: 환경적인 이익이 있는 곳에 일반대중이 접근하도록 조치

□ 최근 2013년 CAP개혁의 키워드는 ‘환경보전(Greening)’ 이었다.

- EU는 2013년에 ‘환경보전(Greening)’ 을 키워드로 하는 정책개혁을 단행(이상만, 2012; CEC, 2

013a)하였는데, 자연스럽게 농업환경정책도 더욱 강화되었다. 먼저, 규정 1305/2013(CEC, 2013b)에서 농촌개발정책을 개혁하였고, 제5조에서 환경 및 기후와 관련된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농림업과 관련된 생태계의 복원, 보존,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농업, 식품, 산림분야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저탄소 및 기후변화에 회복력(Resilience)이 있는 경제체제로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 8가지 환경보존 활동을 도입하고 지불금이 모두 증액되었다.

○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업환경기후시책을 포함하여 총 8가지 시책을 도입하였다.

〈표 3〉 생태계 및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를 위한 시책

조항	사업내용
21조 (1)항 (a)	- 숲 조립 및 형성 지원
21조 (1)항 (b)	- 농지임업 시스템의 형성
21조 (1)항 (d)	- 잠재적 임업생태시스템의 회복력, 환경적 가치 및 악영향 경감 개선을 위한 투자
28조	- 농업환경기후 시책
29조	- 유기농업 시책
30조	- Natura 2000 및 수질관리법규에 따른 보상금 지급
31-32조	- 자연 및 특정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 대한 보상금 지급
34조	- 임업환경기후 서비스 및 임지 보존

자료 : CEC. 2013b.

○ 몇 가지 주요 세부적인 농업환경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환경기후 시책(Agri-environment-climate)(제28조)은 환경과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농업생산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시책에는 모든 개별 농민과 농민단체 그리고 토지관리자 및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들에게는 지급되는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상호준수의무기준을 준수하는 것과 각 회원국에서 설정한 활동을 최소한 1가지 이상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은 최소한 5~7년간의 협약기간을 설정해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소득손실분 그리고 20%이내의 거래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불금 상한액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농업환경기후 시책 지불금 상한액

대상 활동	지불금 상한액
일반적인 단년생 작물	ha당 600유로
특수한 다년생 작물	ha당 900유로
기타 토지 이용	ha당 450유로
위험에 처한 희귀종의 사육	LU당 200유로

자료 : CEC. 2013b. p539.

○ 다음으로 유기농업시책(Organic Farming)(제29조)은 유기농업으로의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기농업의 유지를 위한 보상금을 도입하였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추가적인 조건이 제시되었다. 우선적으로 해당국의 농촌개발프로그램에 유기농업의 유지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고 농업

환경기후 시책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새로운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지불금액은 기본적으로 농업환경기후시책에서 책정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 나투라 2000 및 물관리 시책(Natura 2000 and Water Framework)(제30조) 이 조치는 EU의 환경보존 규정이나 물관리지침 때문에 토지를 농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민들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즉, 환경조치에 따른 소득손실이나 추가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며 이 조치는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책의 지불금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 Natura 2000과 물관리지침 지불금 상한액

내용	상한액
초기 5년 간의 연간 지급 최고액	500 유로/ha
5년 이후의 연간 지급 최고액	200 유로/ha
물관리지침에 따른 연간 지급 보상금 최고액	50 유로/ha

자료: CEC. 2013b. p539.

- 자연제약지역 지원시책(제31-32조)은 산지나 기타 자연적인 장애에 직면한 지역의 농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정책을 대체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업생산 조건의 어려움에 따른 비용이나 소득 감소분을 보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지역은 크게 산지지역, 산지 이외의 심각한 자연조건불리지역 그리고 기타 특정한 조건불리지역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지불금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6> 자연제약지역에 대한 지불금액

내용	지불금액
수혜자의 토지에 대해 연평균 최소 금액	25 유로/ha
수혜자의 토지에 대해 연평균 최대 금액	250 유로/ha
산지지역 수혜자의 토지에 대한 연평균 최대 금액	450 유로/ha

자료 : CEC. 2013b. p539.

- 2013년 CAP 개혁에서 나타나는 농업환경정책의 시사점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효과를 중시하는 것과 동시에 유기농업정책, 물관리 시책, 자연제약지역 지원 시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서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III. 영국은 농촌관리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1. 영국은 EU에서 농촌환경보존 정책의 선도국가이다.

□ 1950년대부터 환경보존단체들의 지속적인 농업환경훼손에 대한 연구보고가 있었다.

- EU의 농업환경정책은 영국의 요구에 의해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은 전통적인 농법과 생

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과학연구용지정제도(Sites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SSSIs)를 1949년부터 운영하고 있었고, 이와 함께 1950년대부터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NCC, 1977)이 발표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환경보호에 관한 인식이 높아졌다.

- 이들 연구에 따르면 2차 대전 이후 영국의 평야지대 (lowland)에서 95%의 허브초지, 80%의 초크와 석회암 초지, 60%의 히스, 50%의 전통림, 50%의 소택지와 황야가 소실되었고, 농약의 광범위한 사용에 따라 급격한 조류 수와 종류의 감소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 농업환경정책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농민단체 간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 환경단체들은 농업생산에 대한 환경규제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농민들과의 계약에 의해서 환경친화적인 저투입농법을 적용해서 환경보호를 실행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농민들에게 소득보상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영국의 EU 가입에 따른 농산물 지지가격 상승으로 자체예산에 의한 소득보상이 어렵게 되면서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으려는 농민들의 이탈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적용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의 수립과 예산지원을 요구하게 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환경단체들의 노력은 막강한 영국의 전국농민회(National Farmers' Union: NFU)와 지주연합회(Country Landowners' Association: CLA)의 로비력에 막혀 번번이 실패하였다. NFU와 CLA는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영국 농수산물 정책결정 및 집행의 중요한 파트너였고, 또한 이들의 영향력 때문에 농수산부가 전통적으로 농업 및 식품에 대해 독립적인 정책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환경단체들의 농업정책에 대한 개입은 NFU와 CLA 그리고 농수산부의 전통적인 상호협력관계와 농업정책결정에 대한 자주권을 위협하는 것으로써 당연히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 그러나 농민단체는 자신들이 농촌지원 환경유지의 파수꾼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

- 그러나 NFU나 CLA가 다른 일반경제단체들처럼 환경단체들과의 논쟁을 기피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두 가지의 자율권, 즉, 농업정책의 형성이나 수행에 관한 영국 농수산부와 농촌사회의 자율권, 그리고 토지이용에 관한 농민과 지주의 자주적 결정권을 강조하였다. 두 단체는 근대적인 농업생산방법의 적용이 심각한 환경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농촌사회와 지역환경유지의 파수꾼임을 주장하고 있었다. 즉, 농촌지역의 환경유지 및 개선과 관련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농업생산방법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농민과 지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이 농업생산에 환경규제를 가하려는 환경단체들과 농민의 자율적인 결정과 참여를 주장하는 농민단체들 간의 대립 속에서 영국 농수산부가 1985년도에 ESA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표면으로 환경악화에 대한 공공적 인식의 증가에 따른 정치적 압력 때문이다. 그 절정은 1984년에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농촌지역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정책을 촉

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된 것으로 이것이 농업환경정책을 도입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영국은 EU 규정 797/85(CEC, 1985)를 근거로 자국의 농업법을 개정하여 ‘1986년 농업법’ 제18편에서 ‘환경민감지역(ESA) 지역의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유럽에서 가장 먼저 농업환경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실시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영국의 주요 농촌환경보존 정책

□ 최초로 도입된 정책은 환경민감지역(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cheme: ESA) 정책이다.

- 1987년 이 정책을 처음 도입한 이래로 이 정책이 폐지된 2005년까지 총 43개 지역을 ESA로 지정하고 관리하였다. 해당 지역의 농민들에게만 적용되는 이 정책은 10년간의 관리계약에 동의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5년 후에 농민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이나 하한은 없지만 대부분의 ESA 지역에서 “전체농장규정 (Whole Farm Rule)”을 적용해서 참여농민의 소유 및 경영토지가 모두 ESA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전체농지가 ESA 정책의 관리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 보조금은 소득감소분, 비용 그리고 인센티브 등을 감안해서 지급하지만 각각의 ESA 지역은 서로 다른 독특한 환경적인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급액수는 서로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는 농장의 장기적 보존계획 (Conservation Plan)상에서 ESA가 규정한 것 보다 더 환경보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본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이 부분을 영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원하고, 일반인의 접근(Access Tier)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ESA 보상금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 EU는 총 50%를 영국에 보상해준다.

□ 영국 전역을 대상으로 적용된 최초의 개혁 정책은 농촌관리(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CSS)정책이다.

- 이 시책은 자연적인 미관과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그리고 역사적 또는 레저상의 가치 때문에 선정된 특정한 경관의 보존, 강화,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에 적합하게 토지를 관리 또는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농민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이 시책이 목표로 하는 것은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장려하고, 간접적으로 일반인들이 전원을 즐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좀 더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i) 전원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 ii)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확대 개선하는 것, iii) 고고학적 유적지를 보존하는 것, 전원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 iv) 파괴되고 있는 토지와 유적지를 복원하는 것, 그리고 v) 새로운 서식지와 경관을 개발하는 것 등이다.
- 영국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환경 및 경관요소와 역사적 유적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외에도 각 지역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특정한 경관 및 서식지를 보조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역의 독특한 환경과 지역발전계획에서의 필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각 지역의 관련 단체들이 협의하여 매년 조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조금은 토지 또는 유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토지에서 10년 동안 준수하겠다는 계약을 한 농민 또는 토지 관리자에게 지급되며, 보조금액은 해당부문의 관리에 따른 소득감소분, 비용, 그리고 일정한 인센티브를 감안해서 계산하며, 각 토지 및 유물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특정한 환경자원의 보존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농민에게 지원된 총액이 연간 최고한도를 초과한 경우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보상금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 EU는 총 50%를 영국에 보상해준다.

□ 농촌관리정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CSS)의 사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1) 경종작물 경작지 (arable farmland)

-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종작물 재배지를 초지로 전환함으로써 전 원지역 야생동식물의 생물학적 다양성 증가나 역사적 유적지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책에서 지원하는 자세한 경관요소들과 활동 그리고 보조금 지급액을 보면 다음의 <표 7-1>과 같다.

<표 7-1> 경종작물 경작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대상경관요소	보조금액 (ha당)
경종작물 재배지의 초지전환	£280
전통 종자공급	£250
기존 휴경지 (높은 환경가치)의 유지	£50
초지전환 초기단계 작업	£40
6미터 경지 두렁 (경계)조성	£32/100m (£533/ha)
2미터 초지 두렁 (경계) 조성	£8/100m (£400/ha)
야생초 종자 파종	£510
화초 식부	£510
봄 작물 식부를 위한 월동 그루터기	£40
저투입 봄 곡물 식부를 위한 월동 그루터기	£125
봄/여름 휴경을 위한 월동 그루터기	£520
경지의 보호 두렁 조성	£90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지의 보호두렁 조성	£270

(2) 석회질 초지 (chalk and limestone grassland)

- 석회질 초지는 야생식물이나 곤충의 유지 그리고 고고학적인 유적의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목초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연간 일정한 크기로 유지하는 조방적인 목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표 7-2〉 석회질 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과 금액

대상경관요소	보조금액 (ha당)
석회질 초지의 관리	£60

(3) 해안지대 (coastal areas)

- 해안의 절벽이나 초지, 모래언덕, 해안가의 히스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경관이나 서식지 그리고 역사적 유적의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관광객에게 단순히 바다 경치뿐만 아니라 새 관찰, 하이킹 등의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표 7-3〉 해안지역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대상경관요소	보조금액 (ha당)
조수간만의 서식지 관리	£20
초지에 조수간만의 서식지 조성	£250
작물재배지 조수간만의 서식지 조성	£555
식물이 자라는 모래언덕 관리	£50
해안관리 시책에 대한 부가적 보조	£60

(4) 토지 경계물 (field boundaries)

- 토지 경계물은 영국에서 각 농촌지역의 서로 다른 역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종류에는 돌담, 울타리, 제방, 수로 등등이 있으며, 각각에 따른 전통적인 토지관리방법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조는 전통적 방법에 따른 토지관리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다양한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표 7-4〉 토지경계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대상경관요소	보조금액
울타리 쌓기, 가지치기, 심기	£3/m
울타리 조성을 위한 부가적 보조	
기존 담의 제거	£0.5/m
울타리 설치 사전 작업	£1/m
매듭과 말뚝	£1/m
주위 흙 복원	£0.5/m
돌담 복원	£12/m
돌담 복원을 위한 부가적 보조	
점유지 내에서 돌을 취득	£4/m
채석장으로부터 돌을 구입	£8/m
경사등 어려움이 있는 경우	£4/m
상부에 철사접합의 경우	£0.6/m
제방 복원	
제방 보수	£10/m
제방 복원	£25/m
흙제방 복원	£3/m
담 또는 울타리 두르기	

양 울타리	£1.2/m
말뚝과 철사	£0.8/m
토끼 그물	£0.6/m
나무 심기 및 관리	
나무 심기	£0.65/tree
나선형 토끼 보호대	£0.2/guard
배수로 및 기타 독 복원	£2/m
완충선 조성	£6/100m (£100/ha)
야생 식물선 조성	£16/100m (£267/ha)

(5) 역사적 유물 및 유적지 (historic features)

- 농촌지역의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을 보호, 보존하기 위하여 이를 포함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표 7-5>와 같다.

<표 7-5> 역사적 유물 및 유적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대상경관요소	보조금액
역사공원의 조성	계획에 따라 가변적임
저택의 정원수	
일반 정원수 식수	£6/tree
저택 및 공원 정원수 식수	£30/guard
전통적인 물품의 복원	£225/ha
전통가옥 및 건물의 복원	총 비용의 약 50%

(6) 평야지대의 히스 (lowland heath)

- 영국에서 히스는 야생의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간주되어 왔고, 최근 이 히스가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그 복원 및 관리에 정책적 보조를 하고 있다. 특히, 근대적인 집약적 목축의 적용에 따라서 사라지고 있는 평야지대의 히스의 유지, 관리에 보조하고 있다.

<표 7-6> 평야지대 히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대상경관요소	보조금액 (ha)
현존 평야지대의 히스의 유지 관리	£20
개선된 현존 평야지대 히스의 유지 관리	£50
평야지대 히스의 조성	£275
히스 복원에 대한 부가적인 지원	£50

(7) 전원지역의 접근로 (new access)

- 접근로의 개설은 일반인들이 경관이나 역사적 유적을 즐기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일반인에 대한 개방이 현 전원관리인 제도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실제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자원 보호의 중요성 때문에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다.

〈표 7-7〉 접근로의 개설 및 관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대상경관요소	보조금액
일반인에 대한 개방 및 도로 설치 개방에 따른 연간 보조금 개방지역에 대한 보조금	£150/year £35/ha
산책로의 설치 개방에 따른 연간 보조금 산책로 길이에 따른 보조금	£150/year £0.15/m
승마 및 사이클 도로 설치 개방에 따른 연간 보조금 도로 길이에 따른 보조금	£150/year £0.30/m
장애자를 위한 도로 설치 개방에 따른 연간 보조금 도로 길이에 따른 보조금	£150/year £0.30/m
교육 및 연구목적의 개방 개방에 따른 연간 보조금 관련 교육용 책자 제작	£500/year £100
개방에 따른 시설물 설치 브리들 문 키싱 문 목재 문 보행자용 다리 벤치	£100 £130 £30 £125 £30
주차장 등을 위한 포장	£5/m ²
장애자를 위한 도로 포장	£7/m ²

(8) 옛 목초지 (old meadows and pastures)

- 개간되지 않은 목초지들은 풍부한 초지의 종류와 꽃뿐만 아니라 곤충들의 서식지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값진 자산들이다. 이들 지역에는 환경적 생물학적 자산뿐만 아니라 과거 인류학적 유적들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CSS을 통해서 그 동안 농업생산 과정에서 거의 90% 이상 파괴된 것으로 알려진 이들 지역의 환경적, 생물학적, 인류학적 자산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별로 전통적이고 특별한 형태의 초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7-8〉 옛 목초지의 유지 관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대상경관요소	보조금액 (ha당)
건초지	£115
방목된 초지 - 3ha이하 토지에 대한 추가 보조금	£85 £30
컴 목초지 (Culm grassland) - 3ha이하 토지에 대한 추가 보조금	£85 £30

(9) 옛 과수원 (old orchards)

- 전통적인 과수원들은 일반적으로 ha당 150그루 이하의 과수를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매우 특징적인 경관을 보여준다. 이들은 상당히 다양한 야생화와 이끼, 곤충, 새 등의

중요한 서식지였다. 영국에서 대부분의 지역은 농업생산을 위해서 개간되었고, 남아있는 대부분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다. 따라서 CSS의 보조금은 현대적인 과수의 재배를 위해서는 보조해 주지 않고 예전의 전통적인 과수들을 복원하거나 이를 통해서 다양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것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표 7-9〉 옛 과수의 유지 관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대상경관요소	보조금액
옛 과수의 복원	£250/ha
과수나무 가지치기	£8/tree
과수 심기	£7/tree

(10) 고지대 (uplands)

- 영국에서 주로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고지대들은 다양한 환경, 경관자원 및 고고학적인 유적의 보고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 기존에 농업생산의 근대화화 집약적 농법의 사용을 촉진하는 농업 지원정책들이 실시됨으로써 많은 환경 및 역사적 자산들이 파괴되었다. 따라서 CSS은 실제 조사를 통해서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경적, 고고학적 자원을 가진 토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표 7-10〉 고지대 유지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대상경관요소	보조금액
고지대의 건초지	£150/ha
고지대의 방목된 초지	£85/ha
고지대의 조방적 목초지 (20ha 이상)	£45/ha (£20/ha)
고지대의 석회질 목초지	£60/ha
개간 농지에 헤더 복원	£70/ha
헤더 황무지의 복원 (300ha 이상)	£50/ha (£20/ha)
헤더 황무지의 강화	£45/ha
헤더 황무지의 서식지 관리	£4/ha
공동목초지 관리에 대한 추가 보조금	£5/ha
고지대 역사적 유물 유적의 복원	£100/year
복원 면적에 대한 보조금	£200/ha
소규모 고지대 산림의 관리	£100/ha

(11) 강이나 호수 주변 지역 (waterside land)

- 강이나 호수 주변지역의 경관과 야생동식물 및 서식지, 고고학적 유적 등의 보존을 위한 것이다. 호수나 갈대밭 등의 조성, 동식물의 서식지 조성, 가축에 의한 제방 훼손 방지, 주변지역 접근로 개설 등의 행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표 4-11〉 강, 호수 주변지역 유지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

대상경관요소	보조금액
--------	------

습지	£100/ha
갈대 밭	£100/ha
수면상승에 대한 추가 보조금	£60/ha
기타 잡목 숲	
통나무	£40/holt
목재용 나무(chamber)	£125/holt

□ 모니터링은 서류 및 방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CSS은 협약기간 동안에 농민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관련 직원이 농가 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한 방문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며 대부분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연간 농장경영활동 보고서를 근거로 서류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한 몇 농가들만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장조사는 주로 육안점검이 이루어지고, 이외에 생태학적, 생물학적인 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농민이 농장경영 협약 시에 합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 RDS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방문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RDS에 통보 승인 받지 않은 행위가 발견되거나 또는 합의된 관리활동이 미진한 경우는 관련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 만약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을 경우는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불하고 지급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향후 2년 동안 모든 농촌발전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3. 영국의 최근 농촌환경보존정책의 사례

□ 2003년부터 농촌환경관리(Environmental Stewardship)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 EU 농업환경정책의 확대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농업환경정책을 도입한 영국은 2003년 CAP의 중간평가개혁과정에서 기존의 농업환경정책을 모두 통합하는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농촌환경관리정책(Environmental Stewardship Scheme: ES)을 도입하였다.
- 농촌환경관리정책을 통해서 영국은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영국 전역의 농경지 및 일반 토지를 환경보전적인 관리지역 조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Broad and Shallow(넓고 얇게)’ 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전국의 대부분의 토지들이 어렵지 않은 환경활동으로 농업환경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DEFRA, 2005)

- 농촌환경관리정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7가지로 제시되었다. i)야생생물의 보존(생물다양성)(conserve wildlife (biodiversity)), ii)경관의 유지 및 개선(maintain and enhance the landscape), iii)역사적 환경의 보호(protect the historic environment), iv)일반인의 전원지역 환경자원 접근 장려 및 전원에 대한 인식 제고(promote public access and understanding of the countryside), v) 자연자원 보호 (protect natural resources), vi) 토양부식과 수질 오염 방지(prevent soil erosion and water pollution), vii) 구릉지역 환경관리 지원(support environmental management of uplands areas) 등이다.

□ 기초수준, 유기수준, 상위수준 관리 사업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 이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시책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기초수준관리지원 사업(Entry Level Stewardship: ELS)은 영국 내의 모든 농민과 토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직접 지불제도(Single Payment Scheme: SPS)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업 및 환경의무규정(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GAEC) 수준이상의 간결하고 효과적인 토지 관리를 의무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 유기수준관리 지원사업(Organic Entry Level Stewardship: OELS)은 유기농업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유기농가 또는 유기농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유기농지원제도(Organic Aid Scheme)에 따라서 지원받고 있는 농가는 제외하고 있다.
- 상위수준관리 지원사업(Higher Level Stewardship: HLS)은 농민이나 토지 관리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 신청서에 대한 평가는 지역의 특정한 자원에 대한 환경적 중요성(specific local targets)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토지 관리협약은 농민이나 토지 관리자들이 이러한 특정자원의 보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의 가치(value for money)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표 8〉 영국 농촌환경관리정책(ES) 개요

	기초수준관리제도 (ELS, Upland ELS)	유기수준 관리제도 (OELS, Upland OELS)	상위수준 관리제도 (Higher Level Stewardship)
수준	기본수준	유기농업 수준	특정한 요건 충족 의무
자격	모든 농민, 토지관리자	유기농업 농민, 농기업	특정지역 및 활동에 관해 해당 지역 농민과 협약
기간	5년간	5년간	10년 이상
보조금	일반적으로 £30(ha/year) - 단, 황무지 수준 이상 토지 또는 필지가 15ha이상 토지 : £8(ha/year) Upland ELS : £62(ha/year) - 위의 경우 £23(ha/year)	일반적으로 £60(ha/year) - 전환기 : £175(ha/ year) (초기 2년간 추가보조) - 과실류 : £600(ha/year) (초기 3년간 추가보조) Upland OELS: £92(ha/year)	협약기간동안 투입물의 획기적 개선 필요(높은 보조금지급의 이유임) 실제 보조금은 협약내용에서 요구하는 관리수준에 따라 다름.

자료 : Natural England, 2013.

- 이 사업을 위해 영국은 전 국토를 8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의 중요한 환경자원과 이에 적합한 활동내용이 무엇인지를 에서 공지하고 이들 활동을 각각의 사업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별로 보상금의 지불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기초수준관리지원사업(ELS)의 사례

- ELS 사업은 농민이나 토지관리자가 자신들의 토지에서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관리하는데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농업생산에 별로 좋지 않은 토지들을 ELS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즉, 생산성이 매우 낮은 토지들이 오히려 조류, 야생생물, 자연자원을 보존하는데 좋은 지역일 수 있기 때문이다.
- ELS의 환경관리 대상 분야는 크게 11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i) 농경지 조류를 위한 경작지의 서식지 관리, ii) 물발퀴, 잠자리, 도롱뇽, 두꺼비 서식지 관리, iii) 농경지 야생식품 서식지 관리, iv) 박쥐와 겨울잠쥐(dormice) 서식지 관리, v) 나비, 벌 및 소멸위기에 처한 초지의 관리, vi) 산토끼 서식지 관리, vii) 구렁지 야생생물 서식지 관리, viii) 경관의 복원 및 보전을 위한 토지 관리, ix) 역사적 환경 자원을 위한 토지 관리, x) 수자원과 건강한 토양을 위한 토지 관리, xi)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 관리 등이다. 이러한 11개 환경관리 분야에서 실제 농민들이 수행하는 토지관리방법은 의무활동과 선택활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 ELS의 환경보존 활동을 살펴보면, 일반지역에서의 선택활동은 총 71가지이며 10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i)선택B: 농경지 경계물 유지 관리를 위한 활동, ii)선택C : 나무와 숲의 유지 관리를 위한 활동, iii)선택D : 역사적 유물과 경관 요소 유지 관리를 위한 활동, iv)선택E : 농경지 완충지 유지 관리를 위한 활동, v)선택F : 경종작물 경작지를 위한 활동, vi)선택G : 다양한 곡물작물 식재를 위한 활동, vii)선택J : 토양과 물 보호를 위한 활동, viii)선택K : 일반지역에서의 초지관리 활동, ix)선택L : 다양한 동물의 사육 활동, x)선택L : 조건불리지역 내의 초지와 황무지 관리 활동 등이다.
- ELS에 대한 신청은 토지소유자, 임차농업자, 위탁경영자, 공동초지 경영권자 등이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향후 5년간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인 관리통제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ELS에 대한 승인은 간단한 ‘ha당 점수’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청한 토지에 해당되는 ‘목표점수’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환경보존 활동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ELS의 환경보존 활동은 4가지의 의무사항(ELS 1개, 구렁지 ELS 3개)와 91가지의 옵션선택사항(ELS 71개, 구렁지 ELS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한 기준 점수가 부여되어 있다.
- 기본적인 점수는 ha당 £30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ha당 30점을 얻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반지역에서 농가의 토지 100ha에 대해 ELS를 신청할 경우 3,000점(30점x100ha)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보존활동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표 10>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0〉 ELS 활동사항 협약 예시

선택활동내용	기준점수	해당토지 면적	점수
헤지로우 관리개선	42점/100m	500m	210
저투입 초지관리	85점/ha	8ha	680
도랑(ditch) 관리	24점/100m	750m	180
경지구석(field corners) 관리	400점/ha	1ha	400
야생조류 씨앗 혼합	450점/ha	2ha	900
하천변 12m 완충지대	400점/ha	1.5ha	600
종다리 터(skylark plot)	5점/개소	18개소	90
총계			3,060

- ELS에 따른 지불금은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를 준수해야 이루어지며, 이는 토양, 서식지, 경관요소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한 모범영농환경조건(GAEC)과 환경, 공공 및 식물복지(public and plant health), 동물복지(animal health and welfare), 축산물 원산지 증명 및 이력추적(Lives tock identification and tracing)에 관한 법정 의무관리규정(Statutory Management Requirements: SMRs)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DEFRA, 2013)
- 상호준수의무(CC)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 농민들은 영농활동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반에 대한 제재가 부과되어 협약에 따른 지불금의 일부 또는 전체 지급 중단, 지급된 지불금의 반환, 협약취소, 향후 2년간 보조금 신청 제한 등의 벌칙이 적용된다.

4. 영국은 2014년에 농촌관리(Countryside Stewardship)정책으로 개편하였다.

☐ 다른 환경보전 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개편했다.

- 영국 정부가 환경관련 정책의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우선, 생물다양성 2020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농촌지역에서의 서식지 관리, 생물종 다양성 증대, 조류보호 등의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토양 및 물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농촌지역에서의 수자원 관리를 정책지표와 연계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산림조성, 토양 및 대기 질 향상 등의 조치와 시너지 효과도 증대시켜야 하기 때문에 변경하였다

☐ 농촌지역의 환경보전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 기존 ES 조치에서는 많은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Broad and Shallow(넓고 얇은)’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의 기초수준시책(Elementary Level Scheme)과 구릉지 및 유기농업에 대한 별도 지원시책이 폐지되었다. 대신 상호준수의무 규정 이상의 활동에 대해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 이와 함께 기존 농촌환경관리(ES) 정책에서는 경작자의 모든 토지가 이 시책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환경보존가치를 제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보상금의 지급방식도 기존의 면적당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던 것에서 환경보존가치가 높은 활동일수록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사업의 종류도 중위시책(Mid Tier)과 고위시책(Higher Tier)으로 변화되었다.

- 중위 시책(Mid Tier)은 많은 지역에서 다년 협약에 의한 환경개선 활동 지원하는 것이며, 고위 시책(Higher Tier)은 환경보호 효과가 높은 지역에서 개별 농가의 환경보존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상위수준 사업(Higher level stewardship)의 후속사업이다. 이외에 자본투자지원(Capital Grants)은 두 가지 사업에 모두 적용되면서 2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지의 경계물 조성 및 관리와 숲 조성 계획, 타당성 연구, 나무 관리 등에 필요한 자본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유기농 전환 및 관리 활동도 지원하며, 촉진기금(Facilitation Fund)을 통해서 집단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토지관리자 그룹의 시범사업도 지원한다.
- 대략적인 환경자원보호 활동 분야는 i)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복원 및 보존, ii) 농업을 통한 수질오염 감소 활동, iii) 숲 조성 및 관리, iv) 홍수 예방활동, v) 농촌지역의 역사적 환경자원 보존, vi) 농촌지역의 경관적 특성 보존, vii) 농촌지역 유전자원 보존, viii) 농촌에 대한 교육적 체험활동 지원 등이다.

□ 중위시책(Mid Tier)의 운영방식

- 이 사업의 목적은 조류(새)와 수분매개체를 위한 농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농업에 의한 수질오염의 확산을 줄이는 것이다. 즉, 조류 보호와 수질 오염 방지가 주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년간의 협약기간동안 선택한 활동을 하거나 1회성 자본투자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 총 131가지의 선택활동과 자본투자 활동 중에 선정하여 시행하며, 신청자들은 잉글랜드 전역을 8개 지역 군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제시한 ‘전국지역특성(National Character Area: NCA)’에서 환경적으로 주요한 활동이라고 밝힌 것 중에서 선택활동을 선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총 159가지의 NCA 요소 및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 그리고 신청자가 선택한 활동에 부여되는 점수에 따라 선정 여부를 일정 기간 동안의 공모기간을 거쳐서 결정하는 체계이다. 여기서 지역별로 제시되어 있는 NCA 활동 요소 중 ‘우선활동(Top-priorities)’ 중에 활동을 선택하고 추가점수를 받기 위해서 ‘기타활동(Other Priorities)’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신청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청자는 ‘우선 활동’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한편, 유기농 전환 및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수로 선정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 모두 받아들이는 체계이다. 유기농 전환 및 관리에 관한 선택사항은 총 1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환기 유기농과 유기농산물 생산지에 대해 별도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신청자는 유기농산물 생산단체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유기농 전환기 지불금은 2년간 지급하며, 유기농 전환계획서도 함께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유기농 전환과 관련된 지불금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촉진기금의 활용(Facilitation fund)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지역의 경관을 관리하려는 농민이나 토지관리자 그룹에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주로 환경적 토지관리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그룹들의 활동이 지역의 환경가치를 보전하는데 충분한 규모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최소 2,000ha의 규모를 갖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작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최소 소유주가 서로 다른 4농가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이들은 서로 이웃해야 하지만 충분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적 가치를 유지하는데 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이 사업의 협약기간은 5년 단위이며, 수질관리를 위한 자본투자는 2년 협약이다. 보상금의 지급은 매년 5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본투자에 대한 보상금은 작업이 완료된 후에 한 번에 지급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단계별 작업 협약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출이 최소 500 파운드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직불금인 기초지불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촌관리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협약의 내용이 농업생산을 중단하는 것이라면 기초지불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역시 직불금의 일종인 그린지불금도 동일한 활동이라면 농촌관리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위시책의 경우에는 총 19가지 활동을 적시하고 이에 대해서는 농촌관리 사업의 지불금을 감액하고 있다.

□ 중위시책(Mid Tier)의 점수 적용 방식

- 농촌관리정책에는 총 126가지 선택활동과 115가지 자본투자 활동을 제시하고 있어서 총 241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중위시책에는 64가지 선택활동과 67가지 자본투자 활동이 제시되어 있고, 고위시책과 자본투자 활동에도 동일한 선택활동과 동일한 금액의 지불금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
- 사업 대상자의 선발은 일정 기간의 공모기간을 거쳐서 경쟁 선발하는 방식이다. 즉, 신청자는 신청계획서를 작성할 때 보다 많은 활동을 수행해서 많은 점수를 획득해야 선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불금의 액수도 활동의 종류에 따라 지급된다.
- 점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점수(Basic Score)는 해당 농지에서 시행해야 하는 해당 지역의 NCA 활동 중 적절한 활동을 구성하는 점수이다. 즉, 해당 농지에 적합한 선택 및 자본투자 활동에 따른 점수이며, 높은 가치, 중간 가치, 낮은 가치의 세 가지 점수 체계로 구성된다. 선택활동이 적용되는 농지의 규모와 기타량을 곱하는 관리점수와 해당 활동에 적용되는량을

고려하는 자본점수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 추가점수(Additional Score)는 신청과정에서 고려하는 기타 기준에 따른 점수이다. 촉진기금의 일부분이거나 유역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원되거나 야생수분매개 및 농지야생생물 사업으로 지원되는 경우에 추가점수가 부여된다.
- 신청자가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 선정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수행하기 편한 중간 또는 낮은 가치의 점수 보다는 NCA에서 요구되는 활동 중 높은 가치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높은, 중간, 낮은 가치 간의 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말하자면, 높은 가치=1,000점, 중간 가치=100점, 낮은 가치=10점 등으로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IV. 우리나라의 농업환경 관련 정책은 어떤가?

- 우리나라는 아직 농업환경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몇 가지 농업과 관련된 환경정책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은 농업분야 환경보전의 시작이다.

☐ 그러나 환경보전 보다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주목적이다.

- 우리나라에서 농업과 환경에 관한 논의는 1994년부터 시작된 소위 ‘환경보전형농업육성법’의 제정이 그 시작이다. 환경농업 육성법에 관한 논의는 관행농업에 따른 농약, 비료, 제초제의 환경피해에 대한 인식이 일부 확산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은 주로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효율적 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환경에 주는 관행농업의 부정적인 효과는 주된 관심 영역이 아니었다. 즉,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관한 논의가 농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의한 소득증대 방안으로만 인식되는 차원에 머무르게 되었다.

☐ 부실인증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 그 동안 3차에 걸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전체 경지면적의 1.1.6%)하였으나 최근 저농약 인증폐지, 부실인증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014년에 전체 경지면적의 5.9%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는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4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서 농업환경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 최근(2016년 3월 11일)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현재의 1조 4천억 원에서 2020년까지 2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는 5대 분야 21개 과제로 구성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농림축산식품부, 2016)을 발표하였다. 인증제도 개선,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 확대,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농업환경보전 강화 등 5대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친환경농업을 통한 토양, 수질 등 농업환경보존기능을 강화하고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모델을 2020년까지 5개소를 육성하기로 하는 등 농업환경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보전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차제에 생산, 유통 및 소비, 자재의 공급, 인증 등 전 분야에서 환경을 우선시하는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환경보전 관련 직불제도 시행되고 있다.

□ 직불금은 환경보전보다는 소득증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 UR 협상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본격화 되면서 1997년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도입되었고, 2004년 농촌개발정책의 도입과 함께 직불제가 개편되면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경관보존 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직불제와 관련된 농업과 환경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불제의 논의과정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보다는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세 가지 직불제를 농업환경 측면에서 보면,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경관보전직불금은 경관작물재배를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다.

- 먼저, 경관보전 직불제의 경우 농촌지역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기능과 전통적인 문화적인 경관을 유지, 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 ‘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농업 ‘활동’과 농업관련 ‘시설’ (예: 밭담)이 창출하는 다양한 경관효과를 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경관’의 개념이 주관적인 요소가 강해서 특정한 작물로 국한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 친환경농업직불금은 화학적 투입재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 다음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경우 농약 및 화학비료 투입을 통제함으로써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농업의 생산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환경적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의 기준이 되는 유기농이 관행적 ‘투입재의 억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산출되는 환경자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자원의 보존은 단순히 친환경농업을 통한 투입재의 억제에 대한 파생효과로만 인식되고 있고, 환경보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한계농지에서 오히려 집약적 농업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한계농지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 기능의 유지를 통한 농지의 보전 및 지역사회 유지 등 매우 중요한 농업 및 농촌 환경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계농지의 유지를 단순히 농업기능으로만 설정하고 있어서 집약적 농업이 전개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고, 따라서 환경보전에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마을 공동기금이 마을 환경요소를 보존하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즉,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환경요소를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마을 차원에서 환경요소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서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고 있다.

□ 직불금은 농촌환경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직불금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환경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관행 농업이 농지와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인식도 농민들에게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선진국에서처럼 직불금을 활용한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제도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3. 환경부의 농업 관련 환경보전 제도도 시행중이다.

□ 환경부 정책에서는 농업이나 농민이 환경보존 사업의 주요 추진주체가 아니다.

- 2013년 환경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정과제 중에서 주관과제 분야의 i)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피해 구제 강화, ii)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iii)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iv)자원에너지순환 이용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등 4건과 v)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vi)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vii)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viii)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ix)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x)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등 6건의 협조과제의 추진 계획 속에 농업환경과 관련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부의 정책은 크게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농업환경정책과 맥락을 같이하지만 실제 그 환경보전을 추진하는 주체를 농업이나 농민으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 특히, 수자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농업의 역할도 매우 크다.

- 이외에도 농업생산활동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비점오염 관리 종합대책’이 시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농촌지역의 도랑유역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농업 비점오염 관리와 농촌지역도랑유역에 대한 관리가 주로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실제 영향이 농촌지역의 농민과 주민들에게 미치고 있어서 농업비점오염 관리를 통한 농촌지역 수질관리를 농업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농업의

비점오염관리와 도랑유역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이 분야가 매우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어느 한 부서를 선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V. 농촌환경정책은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가

1. 포괄적인 농촌정책이 우선 도입되어야 한다.

□ 농촌지역을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다루는 제도적 틀이 전무한 상황

-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6.3%이며, 이중 기존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한 관리지역은 25.5%이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50.5%, 7.8%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역적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구체적인 세부 분야가 없으며, 또한 지역계획에서도 특정지역 개발계획으로 실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농촌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제도적 틀이 부재한 상황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명칭에도 농촌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명칭 자체에 농촌지역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어서 농촌정책을 추진할 구체적인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2008년부터 농촌정책국을 주무국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서 명칭에 농촌정책을 포함하는 표현이 없다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실제 이러한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농촌정책국의 업무 자체도 농촌지역 전체에 대해 지역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지역주도적인 추진방식이 없다는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

□ ‘농업식품농촌부’의 창설과 농촌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

- 농촌정책을 도입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명칭을 농촌의 개념을 포함하는 농업식품농촌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농촌정책을 수립하면서 정책의 담당 범위로 농촌지역의 산업, 공동체, 환경 분야 사업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저투입농업을 우선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농촌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농경연)에 따르면, 도시민의 대다수(62.1%)가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이것이 귀농·귀촌 인구의 급격히 증가추세에 반영되어 있다.

□ 그러나 집약적 영농에 의한 환경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 농약사용량은 화학농약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고, 화학비료의 사용량도 정부지원 중단으로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특히, 우리나라 질소 및 인산 수지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는 과거 논과 밭에서 관찰되던 새나 곤충 등이 사라지고 토양염류 집적과 양분유출로 하천 등의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즉, 국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잘 보존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농업과 농촌이 고투입적인 농업생산 방법에 의해서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다.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저투입 농업 장려금 지급 필요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투입 농업 실천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들이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비 기준에서 30% 이하를 투입하는 농법을 채용하고 4년간 이행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농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생산감소분과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결정한다.

3. 농업의 다기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 고투입 농업은 농촌지역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파괴한다.

- 고투입 집약적 농업의 전개에 따라 농지와 농촌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종 다양성과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촌의 생물다양성이 어느 정도 파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자료가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환경부의 생태계 보존 사업도 농업생산과의 연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농지의 생물다양성을 증대시키는 조치로 한계가 있다.

□ 농촌 도랑 오염은 지하수와 4대강 오염의 원인이다.

-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으로 인해서 농촌지역 수질 저하 및 수자원 고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도랑유역은 전체 우리나라 유역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따라서 고투입적인 농업생산을 통한 농촌지역 도랑의 오염은 지하수의 오염 및 4대강 오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환경부가 농업생산을 직접적인 오염규제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농업생산이 수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이미 인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선제적으로 농업의 비점오염 효과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 농촌의 문화적, 역사적 자원의 소실도 심각하다.

- 농촌인구의 감소와 공동체 파괴로 인해 농촌의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자원이 소실되고 있다. 특히, 농업생산과 관련된 문화적 활동과 역사적 유적인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이를 보존하기 위한 농업활동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농업의 다기능성에 대한 공공재적 성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 농업생산의 다원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의 결과물들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농업의 다기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생산활동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이 아닌 공공재이므로 이에 대한 공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즉, 다기능 농업의 구체적인 활동 결과물을 토대로 한 보상금의 지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농업의 다기능성을 강화하는 목표 설정 필요

- 농업의 다기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목표는 i)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을 통해 농촌경관 보존 및 생물다양성 증대에 기여, ii)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통한 농촌지역의 수질오염 저감 및 수자원 보호에 기여, iii) 농업생산과 관련된 농촌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자원 보존에 기여, iv) 다기능 농업의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 농업의 다기능성을 수행하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환경보존과 관련된 다기능 농업을 시행하는 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환경, 경관, 문화, 역사 등과 관련된 다기능 농업을 실천하고자 4년간 협약을 맺은 농민이나 단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도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다기능 농업활동에 따른 소득감소분과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액수를 계산하여 결정한다. 세부적인 다기능 농업 보상금 지급 분야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i) 농지와 농수로의 동식물 종다양성에 기여하여 구체적으로 동식물 종다양성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농민 (농촌 생태계보존농업 보상금) ii)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도랑유역에서 기존 농업 시비 기준의 50% 이하의 투입재를 적용하는 농민 (농촌 유역관리농업 보상금) iii) 농촌 마을의 경관보존 대상을 사전에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작방법을 제시하고 준수하는 농민 (농촌 경관관리농업 보상금) iv) 마을 환경정비(마을 숲, 마을 산림 관리, 쓰레기 관리, 하천관리) 활동에도 공동 장려금을 지급함. (농촌 마을환경관리 장려금) v) 농업활동과 관련된 역사 유적이거나 문화활동을 적시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설정한 농민(농촌 역사문화보존 농업 보상금)에게 지급하는 것 등이다.

4. 농촌환경관리를 위한 인력육성과 농촌일자리 창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 농민은 현재 농촌의 환경자원을 관리하는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 농민들은 주로 농산물 재배에 국한된 영농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환경자원 보존을 병행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농민들에게 환경자원을 보존하는 농업 경영방식을 보급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 농촌의 생태계,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뿐만 아니라 농촌경관 및 역사, 문화에 대한 부분적인 기초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을 교육하여 농촌지역 환경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에 청년층 전문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농촌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동시에 농촌지역 인구 증가 및 연령 구조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환경관리, 일자리 창출, 인구 증대, 인구구조 개선,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환경친화적인 농지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 농촌에서 농업생산과 환경 및 경관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는 농업을 통한 생물다양성, 생태계, 수질관리, 경관, 농촌문화 보전을 시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귀농·귀촌인들을 이러한 영역에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 농촌환경관리자를 정책사업 관리자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농촌환경관리자에 대한 교육과정 지원을 지원하여 정책사업관리자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에 ‘농촌환경관리과정(가칭)’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교육과정 이수자를 농촌 환경정책 사업을 현장에서 자문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농촌환경관리자를 창업자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농촌환경관리자의 농업과 환경보존 및 역사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창업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농촌 주민들의 일자리 확충과 소득 증대 및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Ⅵ. 맺음말 : 지역적 관리체계의 형성과 자율적 관리가 중요

□ 주민의 파트너십과 거버넌스 형성이 필요하다.

- 농촌환경정책은 다른 농업정책처럼 중앙부처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지방의 농민들이 시행하는 방식의 정책으로는 농촌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의 추진과 관리가 지역 주민들의 파트너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거버넌스가 형성되어야 한다.
- 농촌환경보전 활동의 효과를 판정하는 지표도 사실상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환경적 특성이 지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토양, 수질 및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및 경관과 문화적, 역사적 요소를 평가하는 지표도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환경지표를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결국, 농촌환경보전사업은 그 시작부터 관리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역주민들의 협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지역주민의 다양한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농촌환경정책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학제 간 협력 연구가 필요

-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지역의 환경자원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은 최근까지 특정 학문분야에서 전담하고 있었던 연구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다양한 연구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김진욱 역, 1995, 『작은 것이 아름답다』, 원저: E. F. 슈마허 저, 1987, *Small is Beautiful - A Study of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 범우사.
- 김태연. 2015. “EU 농업환경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23권 3호, p.401-421. 한국유기농업학회.
- 김태연·김배성·박재홍·이명현·강성필. 2013. 『농업환경프로그램 도입방안 연구』, 단국대학교·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16, 『2016~2020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이상만. 2012. “EU 공동농업정책 개혁동향” 『세계농업』 7월호, p.166-1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형준·홍성태 역, 2005,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새물결. 세계환경발전위원회,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CEC. 1985. Council Regulation (EEC) No. 797/85 of 12 March 1985 o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agricultural structure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93: 1-18. Brussel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CEC. 1987. Council Regulation (EEC) No. 1760/87 of 15 June 1987 amending Regulation (EEC) No. 797/85, (EEC) No. 270/79, (EEC) No. 1360/78 and (EEC) No. 355/77 as regards agricultural structures, the adjustment of agriculture to the new market situation and the preservation of the countrysid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167: 1-8. Brussel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CEC. 1991. The Development and Future of the CAP: Reflection Paper of the Commission, COM(1991) 100 Final. Brussels. February 199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CEC. 1992. Council Regulation (EC) No. 2078/92 of 30 June 1992 on agricultural production methods compatibl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maintenance of the countrysid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215: 85-90. Brussel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CEC. 1999a. Council Regulation (EC) No. 1257/1999 of 17 May 1999 on support for rural development from the EAGGF and amending and repealing certain Regulation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160: 80-101. Brussel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CEC. 1999b.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750/1999 of 23 July 1999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1257/1999 on support for rural development from the EAGGF.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214: 31-52. Brussel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CEC. 2003a. Council Regulation (EC) No. 1782/2003 of 29 September 2003 establishing common rules for direct support schem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establishing certain support schemes for farmer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270: 1-69. Brussel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CEC. 2003b. Council Regulation (EC) No. 1783/2003 amending Regulation (EC) 1257/1999 on support for rural development from the EAGGF.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270: 70-77. Brussel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CEC. 2005. Council Regulation (EC) No. 1698/2005 of 20 September 2005 on support for rural development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EAFRD).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277: 1-40. Brussel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CEC. 2013a. Overview of CAP Reform 2014-2020. Agricultural Policy Perspectives Brief No. 5/December 201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CEC. 2013b. Regulation (EU) No. 130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on support for rural development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698/2005.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347: 487-548. Brussel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DEFRA, 2005. *Environmental Stewardship : Look after your land and be rewarded*, Rural

- Development Servic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London.
- DEFRA, 2013. *The Guide to Cross Compliance in England 2013 edition*,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Rural Payment Agency, London.
- Hanley, N. and Oglethorpe, D., 1999. Emerging policies on externalities from agriculture: An analysis of the European Un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1 (5), 1222-1227.
- Natural England, 2009. *Agri-environment schemes in England 2009: A review of results and effectiveness*. Natural England.
- Natural England, 2013, *Entry Level Stewardship - Environmental Stewardship Handbook*, Natural England.
- NCC. 1977. *Nature Conservation and Agriculture*. Nature Conservancy Council, London.

<부록 1>

<영국의 중위시책(Mid-tier)의 선택 활동 및 자본활동 항목>

선택번호	명 칭	지불 단가
AB1	Nectar flower mix (야생 꽃 혼합지대) *꿀벌 및 나비 보호를 위한 야생꽃 지대	£ 51 /ha
AB2	Basic overwinter stubble (기본 월동 그루터기)	£ 84 /ha
AB3	beetle bank(벌레 서식지 보존지) (농작물 밭이나 정원 안에 풀 및 / 또는 다년생 식물이 심어 저해충을 잡아먹는 유익한 곤충, 새 및 다른 동물 군을 키우는 서식지역)	£ 573
AB4	skylack plots(야생조류 서식지 보존지) (농작지에 야생조류를 위해, 낮고 개방된 초목을 만들어 먹이와 동지 서식지의 기능을 하는 지역) * (지역 하나당 9파운드, 최소 2개 이상 존재필요)	£ 18/ha
AB5	Nesting plots for lapwing and stone curlew (야생조류 산란지 및 서식지 보존지) (농작지에 야생조류가 산란 및 동지 서식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둥근 돌 및 자갈을 남겨둔 지역)	£ 524 /ha
AB6	Enhanced overwinter stubble(향상된 월동 그루터기)	£ 436/ha
AB7	whole crop cereals (모든 종의 곡류 재배)	£ 495/ha
AB8	Flower-rich margins and plots (꽃이 가득한 마진지역)	£ 495/ha
AB9	Winter bird food (겨울 간 조류먹이 제공지역)	£ 640/ha
AB10	(Unharvested cereal headland) 수확하지 않은 곡류 알갱이지대 (조류의 서식지역 조성 및 먹이공급을 위한 지역)	£ 640/ha
AB11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	£ 532/ha
AB12	Supplementary winter feeding for farmland birds (농지의 새들을 위한 겨울철 먹이 보충) * (AB9번 항목 위치 2ha 이내에 2개씩 필요)	£ 621/t *2
AB13	Brassica fodder crop (브라시카 사료 작물)	£ 100/ha
AB14	Harvested low input cereal (수확된 저 투입 농산물)	£ 266/ha
AB15	Two year sown legume fallow (2년생 콩과 식물휴경지)	£ 522/ha
AB16	Autumn sown Bumble bee mix (추운기간의 벌새 믹스)	£ 550/ha
BE1	Protection of in-field trees on arable land (경작지에서의 논밭 보호)	£ 420/ha
BE2	Protection of in-field trees on intensive land (집중 초원에서의 논밭 나무의 보호)	£ 190/ha
BE3	Management of hedgerows (생울타리 관리) *3 : 울타리의 한 면 100m당 £8 울타리의 양 면 100m당 £16	£ *3
GS1	Take small areas out of management (관리면에서의 작은지역 관리)	£ 365/ha

GS2	Permanent grassland with very low inputs (outside SDAs) (매주 낮은 투입량을 가진 영원한 목초지(SDAs 외부))	£ 95/ha
GS3	Legume and herb-rich swards (풍부한 허브 및 콩류 초지 잔디)	£ 331/ha
GS4	Legume and herb-rich swards (풍부한 허브 및 콩류 초지 잔디)	£ 309/ha
GS5	Permanent grassland with very low inputs in SDAs (SDAs에서 매우 낮은 투입량을 가진 목초지)	£ 16/ha
GS15	Haymaking supplement (건초제조 보급)	£ 85/ha
GS16	Rush infestation control supplement (러시 감염 제어 보충 교재)	£ 73/ha
GS17	Lenient grazing supplement (방목 식물)	£ 44/ha
HS1	Maintenance of weatherproof traditional farm buildings (내후성 전통 농장 건물 유지 보수)	£ 3.25/ m^2
HS2	Take historic and archaeological features out of cultivation (재배에서 역사적, 고고학적 특징을 취하기)	£ 425/ha
HS3	Reduced-depth, non-inversion cultivation on historic and archaeological features (역사적 및 고고학적 특징에 대한 심층적인 비 반전 재배)	£ 79/ha
HS4	Scrub control on historic and archaeological features (역사 및 고고학 기능에 대한 스크럽 제어)	£ 137/ha
HS5	Management of historic and archaeological features on grassland (목초지의 역사적, 고고학적 특징 관리)	£ 30/ha
HS6	Maintenance of designed/engineered water bodies (설계 / 설계된 수역 유지)	£ 440/ha
HS8	Maintenance of weatherproof traditional farm buildings in remote areas (외진 지역의 내후성 전통 농장 건물 유지 보수)	£ 6.73/ m^2
HS9	Restricted depth crop establishment to protect archaeology under an arable rotation (경작 중, 고고학을 보호하기위한 농작물 수확 제한)	£ 174/ha
OP1	Overwintered stubble (월동한 그루터기)	£ 116/ha
OP2	Wild bird seed mixture (야생 조류 종자 혼합물)	£ 640/ha
OP3	Supplementary feeding for farmland birds (농지 조류 보충 먹이주기) *4 : 매 OP2지역 옆마다 2ha 크기씩	£ 494/t *4
OP4	Multi species ley (종 다양성 유지)	£ 115/ha
OP5	Undersown cereal (비주류의 곡물류)	£ 86/ha
OR1	Organic conversion – improved permanent grassland (유기농 전환 – 영구 초지 개선)	£ 75/ha
OR2	Organic conversion – unimproved permanent grassland (유기농 전환 – 비영구 초지 개선)	£ 640/ha
OR3	Organic conversion – rotational land (유기농 전환 – 순환 지대)	£ 175/ha
OR4	Organic conversion – horticulture (유기농 전환 – 원예)	£ 400/ha
OR5	Organic conversion – top fruit (유기농 전환 – 고급과일)	£ 450/ha

OT1	Organic land management – improved permanent grassland (유기농 관리 – 영구적 초원 개선)	£ 40/ha
OT2	Organic land management – unimproved permanent grassland (유기농 관리 – 비 영구적 초원 개선)	£ 20/ha
OT3	Organic land management – rotational land (유기농 관리 – 순환 지대)	£ 65/ha
OT4	Organic land management – horticulture (유기농 관리 – 원예)	£ 200/ha
OT5	Organic land management – top fruit (유기농 관리 – 고급과일)	£ 300/ha
OT6	Organic land management – enclosed rough grazing (유기농 관리 – 밀폐된 거친 방목)	£ 8/ha
SP6	Cattle grazing supplement (가축 방목 보충 교재)	£ 45/ha
SW1	4m to 6m buffer strip on cultivated land (경작지에서 4m ~ 6m 완충 대)	£ 53/ha
SW2	4m to 6m buffer strip on intensive grassland (집중 초원에서 4m에서 6m 완충 대)	£ 170/ha
SW3	In-field grass strips (초원지대 내부 잔디 띠)	£ 557/ha
SW4	12m to 24m watercourse buffer strip on cultivated land (경작지에서 12m ~ 24m 수로 완충 대)	£ 512/ha
SW5	Enhanced management of maize crops (옥수수 작물의 관리 개선)	£ 133/ha
SW6	Winter cover crops (겨우살이 작물)	£ 114/ha
SW7	Arable reversion to grassland with low fertiliser input (낮은 비료 투입으로 목초지로의 경작 가능)	£ 311/ha
SW8	Management of intensive grassland adjacent to a watercourse (수로에 인접한 집중 초원 관리)	£ 202/ha
SW9	Seasonal livestock removal on intensive grassland (집중 초원에서의 계절적 축산 제거)	£ 88/ha
SW10	Seasonal livestock removal on grassland in SDAs next to streams, rivers and lakes (하천, 강, 호수 옆의 SDAs에 있는 초원에서의 계절성 가축먹이지대 제거)	£ 36/ha
SW11	Riparian management strip (강기슭 관리 strip)	£ 440/ha
SW14	Nil fertiliser supplement (무첨가 비료 보충 교재)	£ 131/ha
UP1	Enclosed rough grazing (거친 방목)	£ 39/ha
WD3	Woodland edges on arable land (경작지 가장자리의 숲지대)	£ 323/ha
WD7	Management of successional areas and scrub (연속적인 영역 및 관목지대 관리)	£ 74/ha
WD9	Livestock exclusion supplement – scrub and successional areas (가축 배제 보충 – 관목지대 및 연속 분야)	£ 121/ha

WT1	Buffering in-field ponds and ditches in improved grassland (완충역할을 하는 초원에서의 연못 및 도랑)	£ 201/ha
WT2	Buffering in-field ponds and ditches on arable land (완충역할을 하는 경작지에서의 연못 및 도랑)	£ 501/ha
BN1	Stone-faced bank repair (전통 돌 담벽 수리)	£ 31/m
BN2	Stone-faced bank restoration (전통 돌 담벽 복원)	£ 86/m
BN3	Earth bank creation (토양 저장고 제작)	£ 13.50/m
BN4	Earth bank restoration (토양 저장고 재생)	£ 7/m
BN5	Hedgerow laying (낮은 야생 울타리지대)	£ 9.40/m
BN6	Hedgerow Coppicing (관목 야생 울타리지대)	£ 4/m
BN7	Hedgerow Gapping-up (산울타리형 야생 울타리지대)	£ 9.50/m
BN8	Hedgerow supplement – casting up (야생 울타리지대 지원 – 조성)	£ 3/m
BN10	Hedgerow supplement – Top Binding and Staking (야생 울타리지대 지원 – 윗부분 묶기 및 쌓기)	£ 3.40/m
BN11	Planting new hedges (야생 울타리지대 조성)	£ 11.60/m
BN12	Stone Wall Restoration (돌벽 재생)	£ 25/m
BN13	Stone wall supplement – Top wiring (돌벽 지원사업 – 윗부분 묶기)	£ 3.60/m
BN14	Stone wall supplement – Stone from quarry (돌벽 지원사업 – 채석장에서 온 돌)	£ 44/m
FG1	Fencing (울타리치기)	£ 4/m
FG2	Sheep netting (양 그물 길)	£ 4.90/m
FG3	Permanent electric fencing (영구적인 전기 울타리)	£ 4.90/m
FG4	Rabbit fencing supplement (토끼 울타리 조성)	£ 2.50/m
FG12	Wooden Field Gate (농장입구 나무문)	£ 390/문
FG14	Badger Gates (오소리 통로)	£ 135/문
FG15	Water Gates (수로)	£ 240/문
LV3	Hard bases for livestock drinkers (가축 사료용 급수기)	£ 110/장소
LV4	Hard bases for livestock feeders (가축 사료용 먹이 공급기)	£ 170/장소
LV5	Pasture pumps and associated pipework (목초펌프 및 관련 배관)	£ 220/펌프
LV6	Ram pumps and associated pipework (램 펌프 및 관련 배관)	£ 1,480/펌프

LV7	Livestock troughs (가축의 골짜기)	£ 110/골짜기
LV8	Pipework associated with livestock troughs (가축 골짜기와 관련된 배관 공사)	£ 2.65/m
PA1	Implementation plan (계획 이행)	£ 1,100/계획
RP1	Resurfacing of gateways (통로 재포장)	£ 92/통로
RP2	Gateway relocation (통로 재배치)	£ 340/통로
RP3	Watercourse crossings (수로 통로)	£ 300/통로
RP4	Livestock and machinery hardcore tracks (가축 및 기계 하드 코어 트랙)	£ 33/m
RP5	Cross drains (교차 배수로)	£ 245/배수로
RP6	Installation of piped culverts in ditches (배수로에 배관 된 배수구 설치)	£ 340/지하수로
RP7	Sediment ponds and traps (퇴적물 연못과 함정)	£ 10/ m^2
RP9	Earth banks and soil bunds (토양 저장고 및 토양 بند)	£ 155/*1
RP10	Silt filtration dams or seepage barriers (실트 여과 댐 또는 침투 장벽)	£ 75/유닛
RP11	Swales (자연수로)	£ 5.95/ m^2
RP12	Check dams (댐 점검)	£ 42(댐마다)
RP13	Yard – underground drainage pipework (마당 – 지하 배수 배관)	£ 5.50/m
RP14	Yard inspection pit (마당 검사 구덩이)	£ 200/유닛
RP15	Concrete yard renewal (콘크리트 마당 재건)	£ 27.14/ m^2
RP16	Rainwater goods (빗물저장소)	£ 11.40/m
RP17	Storage tanks underground (지하 저장탱크)	£ 350/ m^3
RP18	Above ground tanks (지상 저장탱크)	£ 100/ m^3
RP19	First-flush rainwater diverters/downpipe filters (빗물 정화조, 지하파이프 필터)	£ 125/유닛
RP20	Relocation of sheep dips and pens (양치기와 울타리의 재배치)	£ 3,675/유닛
RP21	Relocation of sheep pens only (양 울타리만 재배치 경우)	£ 1,830/유닛
RP22	Sheep dip drainage aprons and sumps (양 하수구멍 앞치마와 기름 통)	£ 18.25/ m^2
RP23	Installation of livestock drinking troughs (in draining pens for freshly dipped sheep) (가축을 위한 drinking troughs 설치) (갓 dip bath(양 담그기)에서 작업을 마친 양을 위한) * dip bath(양 담그기) : 양의 건강 및 위생관리를 위해 양을 씻기고, 관리하는 작업을 위한 공간	£ 68/유닛
RP24	Lined biobed plus pesticide loading and washdown area (생물 표식 및 살충제 투입 및 세척 지역)	£ 118/ m^2

RP25	Lined biobed with existing washdown area (기존의 세척된 지역의 생물 표식)	£ 77/m ²
RP26	Biofilters (바이오필터)	£ 990/유닛
RP27	Sprayer or applicator load and washdown area (분무기 또는 애플리케이터 로드 및 세척 영역)	£ 40/m ²
RP28	Roofing (sprayer washdown area, manure storage area, livestock gathering area, slurry stores, silage stores) 루핑 (분무기 세척 지역, 분뇨 저장 공간, 가축 집결 지역, 슬러리 점포, 사일리지 점포)	£ 62/m ²
RP29	Self supporting covers for slurry stores (슬러리 저장을 위한 자체지지 커버)	£ 30.50/m ²
RP30	Floating covers for slurry stores and lagoons (슬러리 매장 및 석호 용 플로팅 커버)	£ 5.60/m ²
TE1	Planting standard hedgerow tree (표준 규격 hedgerow 나무심기)	£ 8.80/그루
TE3	Planting fruit trees (과수나무 심기)	£ 22.50/그루
TE6	Tree guard (tube and mesh) (나무 보호대(튜브 및 메쉬))	£ 4/방벽
TE7	Tree guard (wood post and rail) (나무 보호대(나무 말뚝 및 울타리))	£ 59.50/방벽
TE8	Tree guard (wood post and wire) (나무 보호대(나무 말뚝 및 철조망))	£ 84/방벽
TE10	Coppicing bankside trees (CBT : 시냇물이나 강가를 따라 나무, 덩굴 등을 조성하여 가축에 의한 오염을 막는 활동을 뜻함.)	£ 52/그루
TE11	Tree surgery (나무 외과의) *2: 96.50£/그루 : 나무가 잘렸거나, 20cm이상일 경우 200£/그루 : 나무가 20cm를 넘을 경우	£ *2
WN5	Pond Management(frist 100sq m) (우물 관리(초기 100평방 미터 당))	£ 270/못
WN6	Pond Management(areas greater than 100sq m) (우물 관리(이후 100평방 미터 당))	£ 170/100m ²
BN12	Stone Wall Restoration (돌벽 재생)	£ 25/m
BN13	Stone wall supplement - Top wiring (돌벽 지원사업 - 윗부분 묶기)	£ 3.60/m
BN14	Stone wall supplement - Stone from quarry (돌벽 지원사업 - 채석장에서 온 돌)	£ 44/m

<부록 2>

<Mid-Tier의 물관리 관련 활동 목록>

선택번호	명 칭	지불 단가
RP2	Gateway relocation (통로 재배치)	£ 340/통로
BN7	Hedgerow Gapping-up (산울타리형 야생 울타리지대)	£ 9.50/m
FG15	Water Gates (수로)	£ 240/문
LV3	Hard bases for livestock drinkers (가축 사료용 급수기)	£ 110/장소
LV4	Hard bases for livestock feeders (가축 사료용 먹이 공급기)	£ 170/장소
LV5	Pasture pumps and associated pipework (목초펌프 및 관련 배관)	£ 220/펌프
LV6	Ram pumps and associated pipework (램 펌프 및 관련 배관)	£ 1,480/펌프
LV7	Livestock troughs (가축의 골짜기)	£ 110/골짜기
LV8	Pipework associated with livestock troughs (가축 골짜기와 관련된 배관 공사)	£ 2.65/m
RP1	Resurfacing of gateways (통로 재포장)	£ 92/통로
RP2	Gateway relocation (통로 재배치)	£ 340/통로
RP3	Watercourse crossings (수로 통로)	£ 300/통로
RP4	Livestock and machinery hardcore tracks (가축 및 기계 하드 코어 트랙)	£ 33/m
RP5	Cross drains (교차 배수로)	£ 245/배수로
RP6	Installation of piped culverts in ditches (배수로에 배관 된 배수구 설치)	£ 340/지하수로
RP7	Sediment ponds and traps (퇴적물 연못과 함정)	£ 10/m ²
RP9	Earth banks and soil bunds (토양 저장고 및 토양 بند)	£ 155/★1
RP10	Silt filtration dams or seepage barriers (실트 여과 댐 또는 침투 장벽)	£ 75/유닛
RP11	Swales (자연수로)	£ 5.95/m ²
RP12	Check dams (댐 점검)	£ 42(댐마다)
RP13	Yard – underground drainage pipework (마당 – 지하 배수 배관)	£ 5.50/m
RP14	Yard inspection pit (마당 검사 구덩이)	£ 200/유닛

RP15	Concrete yard renewal (콘크리트 마당 재건)	£ 27.14/ m^2
RP16	Rainwater goods (빗물저장소)	£ 11.40/m
RP17	Storage tanks underground (지하 저장탱크)	£ 350/ m^3
RP18	Above ground tanks (지상 저장탱크)	£ 100/ m^3
RP19	First-flush rainwater diverters/downpipe filters (빗물 정화조, 지하파이프 필터)	£ 125/유닛
RP20	Relocation of sheep dips and pens (양치기와 울타리의 재배치)	£ 3,675/유닛
RP21	Relocation of sheep pens only (양 울타리만 재배치 경우)	£ 1,830/유닛
RP22	Sheep dip drainage aprons and sumps (양 하수구멍 앞치마와 기름 통)	£ 18.25/ m^2
RP23	Installation of livestock drinking troughs (in draining pens for freshly dipped sheep) (가축을 위한 drinking troughs 설치) (갓 dip bath(양 담그기)에서 작업을 마친 양을 위한) * dip bath(양 담그기) : 양의 건강 및 위생관리를 위해 양을 씻기고, 관리하는 작업을 위한 공간	£ 68/유닛
RP24	Lined biobed plus pesticide loading and washdown area (생물 표식 및 살충제 투입 및 세척 지역)	£ 118/ m^2
RP25	Lined biobed with existing washdown area (기존의 세척된 지역의 생물 표식)	£ 77/ m^2
RP26	Biofilters (바이오필터)	£ 990/유닛
RP27	Sprayer or applicator load and washdown area (분무기 또는 애플리케이터 로드 및 세척 영역)	£ 40/ m^2
RP28	Roofing (sprayer washdown area, manure storage area, livestock gathering area, slurry stores, silage stores) 루핑 (분무기 세척 지역, 분뇨 저장 공간, 가축 집결 지역, 슬러리 점포, 사일리지 점포)	£ 62/ m^2
FG1	Fencing (울타리치기)	£ 4/m
FG2	Sheep netting (양 그물 길)	£ 4.90/m
FG3	Permanent electric fencing (영구적인 전기 울타리)	£ 4.90/m
FG4	Rabbit fencing supplement (토끼 울타리 조성)	£ 2.50/m
FG5	Fencing supplement – difficult sites (펜스 지원사업 – 어려운 지역)	£ 1.24/m